

# 업무협력 협약서(안)

(재)서울디자인재단 | (주)이니스프리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(주)이니스프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 
두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콘텐츠 개발과 사업교류 협력을 통하여 DDP 공간을 활성화  
시키고 디자인 콘텐츠 확산과 공익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

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을 준수하며,  
상호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.

## 제3조(업무협력)

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며, 구체적인 방법과  
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
(재)서울디자인재단	(주)이니스프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공간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협업</li><li>행사 운영 및 공간 지원(사용면적 62.86㎡)</li><li>대내외 협업 및 홍보 등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공익목적사업 운영(무료메이크업, 교육 등)</li><li>운영을 위한 상품, 서비스 제공</li><li>지속적인 데스크 운영, 위생, 매장 환경 관리</li><li>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</li><li>대내외 협업 및 홍보 등</li><li>시설사용 관리비 (1㎡당 11,000원, 전기요금별도)</li><li>향후 키오스크 재단 측 기부채납(협의 중)</li></ul>

- 사업방향 협의 및 결정은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며,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긴밀한  
협력 체계를 구축한다.
- 본 협약에 의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 
수정될 수 있다.
- '이니스프리'는 이벤트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제공제품의 파손에 대해 보수를  
지원하고, 분실 시 추가 공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그 수준을 정한다.

## 제4조(분쟁해결)

-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- 본 협약서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## 제5조(보안)

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 
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, 본 협약서 효력 종료 후에도 비밀 유지의 의무는 유효하고, 이를  
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## 제6조(효력 및 해지)

-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2년간 유효하다. 단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그 효력은  
연장된다.
- 본 협약서의 효력을 중도에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하여  
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
- 본 협약서에 의해 합의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종료 시 유효기간에도 효력을 갖는다.

## 제7조(보관)

본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7. 9.



(재)서울디자인재단

이 근 (인)

innisfree

(주)이니스프리

안 세 홍 (인)